

인천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2936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성, 김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우희창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1. 7.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C을 상대로 ‘11,055,088원 및 그중 10,033,504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남편인 D는 2020. 8. 21. 사망하였고, 피고 및 자녀 E, C이 상속인들이다. 위 상속인들은 2021.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1.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1. 7. 21.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 8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7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판단

1)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시가격 2억 5,6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이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는 망인과 1979. 1.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망인이 2020. 8. 21. 사망할 때까지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처럼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혼인 중인 1993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상속받아 2004년에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피고와 함께 20년 가까이 거주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역시 망인과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록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라) 피고는 1952년생의 고령으로 경제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나이인데, C를 포함한 피고의 자식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C의 채무상태가 고려되었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마)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2억 5,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피담보채무 합계가 240,8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한 점, C의 상속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의 동기와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가 사해행위이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